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313

제출년 월일 : 2008. 6. .
발 의 의 원 : 김진기 의원外 6人

1. 제안이유

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해외연수의 필요성과 적정성여부를 투명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를 강화하기 위함(안 제4조)

○ 의원 3인을 1인으로 감원

○ 시민사회단체 대표 2인을 4인으로 확대

3. 참고사항

가. 신 · 구조문대비표

나. 관련규칙

속초시의회규칙 제　　호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위원회의 위원은 부의장외에 의장이 추천한 의원 2인, 시민사회단체 대표 2인" 을 "위원회의 위원은 부의장, 시민사회단체 대표 4인"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③(생략) ④위원회의 위원은 부의장외에 의장이 추천한 의원 2인, 시민사회단체 대표 2인, 관내 대학교수 2인으로 하며, 의장이 위촉한다. ⑤(생략)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③(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부의장, 시민사회단체 대표 4인,----------. ⑤(현행과 같음)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공무국외여행자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속초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부의장외에 의장이 추천한 의원 2인, 시민사회단체 대표 2인, 관내 대학교수 2인으로 하며, 의장이 위촉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3.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이 된다.
③위원회는 의원 또는 관련자에게 심사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등에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및 여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8조(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여행보고서 제출) ①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